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 안 번호 4305

제안연월일: 2024. 9.

제 안 자:문화체육관광위원장

1. 대안의 제안경위

건 명	의안 번호	발의자	발의일	심사경과		
대중문화 예술산업 발전법 일부 개정법률안	2200033	강유정의원 등 10인	'24.5.30.	상정	제417회 국회(임시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24.8.26.)	
				소위 심사	제417회 국회(임시회) 제1차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² 24.8.27.)	
	2200882	김승수의원 등 11인	'24.6.24.	상정	제417회 국회(임시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24.8.26.)	
				소위 심사	제417회 국회(임시회) 제1차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24.8.27.)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 9. 5.)는 위 2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이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국회법 제51조에 따라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2.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불안정한 지위로 인해 대중문화예술인들이 불합리한 대우를 받지 않게 보호하자는 취지로 만들어진 표준계약서는 법적 구속성이 없어분야별 표준계약서가 만들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률이 저조한상황임.

대중문화예술산업 실태조사에 따른 대중문화예술 연습생 표준계약 서의 사용률은 2020년 54.9%에 불과했으며,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또 는 연습생) 표준 부속합의서의 사용률은 57.1%로 집계됨.

이에 현장에서의 표준계약서 사용률 제고를 위해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에 대하여 대중문화예술산업에 관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해 산업 내 대중문화예술인들의 고용안전망을 강화하고 표준계약서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8조제2항 신설 등).

한편, 현행법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가 소속 대중문화예술인의 요 구가 있는 경우에는 회계장부 등 관련 회계 내역을 지체없이 해당 대 중문화예술인에게 공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가 정확한 회계 내역을 제공하지 않아 수익 배분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거나, 위계로 인한 불공정 계약 관행, 계약의 미이행 등의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제도적 개선이 요구됨.

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불공정행위 관련 조사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는 소속 대중문화예술인의 요구가 있는 경우 회계 장부 등 관련 회계 내역 및 지급하여야 하는 보수에 관한 사항을 제공하고 요구가 없는 경우에도 일정 기준에 따라 이를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대중문화예술 관련 계약 및 회계처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6조, 제14조 및 제41조).

법률 제 호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의 위반 여부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중문화예술사업자 또는 대중문화예술사업자와 대중문화예술제작물 제작공급계약을 체결하는 자에게 관련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의제출 또는 출석・답변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8조의 제목 "(표준계약서의 제정·보급)"을 "(표준계약서의 사용 및 확산)"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에 대하여 대중문화예술산업에 관한 재정지원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같은 법상의 지원을 받은투자조합의 문화산업에 관한 투자를 포함한다)을 하는 경우 우대할 수있다.

제14조제2항 중 "내역을"을 "내역 및 제3항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보수에 관한 사항을"로, "공개하여야"를 "제공하여야 하며, 요구가 없는 경우에도 소속 대중문화예술인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제공하여야"로 한다.

제41조제2항제3호 중 "회계장부를"을 "회계장부 등 회계 내역 및 지급 하여야 하는 보수에 관한 사항을"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1항 및 제2항에"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공정한 영업질서의 조성)	제6조(공정한 영업질서의 조성)
① ~ ③ (생 략)	① ~ ③ (현행과 같음)
<u> <신 설></u>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
	항의 위반 여부의 확인을 위하
	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
	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중문화예술사업자 또는
	대중문화예술사업자와 대중문
	화예술제작물 제작공급계약을
	체결하는 자에게 관련된 사항
	을 보고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
	료의 제출 또는 출석・답변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
	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8조(표준계약서의 제정·보급)	제8조(표준계약서의 사용 및 확
① (생 략)	<u>산)</u> ① (현행과 같음)
<u><신 설></u>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
	항에 따른 표준계약서를 사용
	하는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에
	대하여 대중문화예술산업에 관
	한 재정지원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8조 및 제9조에 따

② (생략)

제14조(회계처리) ① (생 략)

②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는 소속 대중문화예술인의 요구가 있는 경우 제1항에 따른 회계 장부 등 해당 대중문화예술인 과 관련된 회계 <u>내역을</u> 지체 없이 해당 대중문화예술인에게 <u>공개하여야</u> 한다.

③ (생 략)

제41조(과태료) ① (생 략)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2. (생략)
- 3. 제14조제2항을 위반하여 <u>회</u>

	라 같은 법상의 지원을 받은
	투자조합의 문화산업에 관한
	투자를 포함한다)을 하는 경우
	우대할 수 있다.
	<u>③</u> (현행 제2항과 같음)
제	14조(회계처리) ① (현행과 같
	승)
	②
	<u>내역 및 제3항에</u>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보수에
	<u> 관한 사항을</u>
	제공하여야
	하며, 요구가 없는 경우에도 소
	속 대중문화예술인에게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u>제공하여야</u>
	③ (현행과 같음)
제	41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②
	1.·2. (현행과 같음)
	3 <u>\$</u>]

계장부를 제공하지 아니한 자

4. ~ 6. (생략)

- ③ (생 략)
-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 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이 부과·징수한다.

계장부	등	회계	내역	및	ス	급
아여야	하	는 보	-수에	관현	한	사
항을					_	

- 4. ~ 6. (현행과 같음)
- ③ (현행과 같음)
- ④ <u>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u>----